

농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복지국장
제출연월일	2023. 4. 11.

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0호
----------	------

제출연월일 : 2023. 4. 11.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회 계 과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2023. 1. 5.)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변경
(안 제2조제3항)
- 나.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규정 신설 (안 제5조제3항)
- 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변경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1912(2023.2.20.)호]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미반영 [복지정책과-7608(2023.3.6.)호]
 - 개선의견 : 성별 균형참여에 관련한 개선의견 제공

- 권고사유 : 위원회 구성의 성별을 고려할 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 및 운영한다.
- 반영여부 : 기존 조항에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선내용 미반영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예산실-1873(2023.2.13.)호]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2. 13. ~ 2023. 3. 5.(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운영지원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논산시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논산시장”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있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논산시 본청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2항 본문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관련업체가 제9조의2”를 “관련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를 “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회의”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간사와 서기 각”을 “간사”로 하고, “회계과장, 서기는 계약담당으로”를 “계약담당 주사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제1항 중 “시행령 제107조”를 “영 제107조”로 한다.

제7조 중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자문요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자문요청서”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때

5.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별표의 계약심의위원회 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1시간이상 초과시 50,000원 추가지급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회	계	과	장	김 영 기
	계	약	팀	장	강 도 영
	담	당	자		박 영 숙 (041-746-549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u>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② <u>위원장은 논산시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u></u></p> <p>1.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u>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u></p> <p>2. (생략)</p> <p>3.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u></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 ----- ----- ----- ----- <u>구성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③ ----- ----- <u>성별을 고려하여 논산시장</u>----- ----- <u>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u>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u>----- -----</p> <p>2. (현행과 같음)</p> <p>3. ----- ----- ----- ----- ----- <u>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u></p>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신 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

②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 건설기술인 -----

<삭 제>

6. -----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논산시 본청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위원-----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4조(기능) ① -----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략)

라. 관련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 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

1. -----

----- “영”-----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관련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2. 법 제31조-----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6.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 시장-----

한다.

② 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 서기는 계약담당으로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

-.

② 위원회의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
-----간사 1명

을-----
계약담당 주사로-----.

제6조(소위원회) ① -----

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 영 제107조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요청 등) -----

----- 심의·자문요청서 -----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심의·자문요청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

-----.

1. ~ 3. (현행과 같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

<신 설>

4. (생략)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없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70,000	1시간이상 초과시 30,000원 추가지급
	여비	민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 여비규정
전문가 기술검토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0,000	주 1회를 기준으로 산정 (단, 공사중지 기간은 제외함)

는 때

5.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00,000	1시간이상 초과시 50,000원 추가지급
	여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문가 기술검토	심사 또는 자문비	(현행과 같음)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 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회계과장 김 영 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 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8. 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 8. 19., 2017. 8. 9.>

[전문개정 2010. 7. 26.]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 6. 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 또는 국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